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89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김정호·어기구·정성호

허종식 • 이연희 • 윤후덕

조 국・이훈기・정을호

김성환 · 서왕진 · 전재수

송재봉 • 부승찬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,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,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 자 함.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, "구분"을 "구분과 업종별 최저임금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(이하 "업종별 최저임금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해연도 심의 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최저임금으로"를 "최저임금 또는 업종별 최저임금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	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
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	분) ①
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	
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	
을 고려하여 정한다. <u>이 경우</u>	<u><후단 삭</u>
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	<u>제></u>
<u>할</u>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
	성,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
	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
	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
	의 범위에서 사업의 종류별로
	구분하는 최저임금(이하 "업종
	별 최저임금"이라 한다)을 정
	<u>할</u> 수 있다.
② 제 1 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	<u>③</u> 제2항
별 <u>구분</u> 은 제12조에 따른 최저	<u>구분과 업종별 최저임금</u>
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	
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	
<u><신 설></u>	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12조
	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제5조(최저임금액) ① 최저임금액
(<u>최저임금으로</u> 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간・일(日)・주(週) 또는 월(月)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일·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(時間給)으로도 표시하여야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최저임금 및 업송별 최저임금
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해
연도 심의 전 작성하여 공개하
<u> 여야 한다.</u>
제5조(최저임금액) ①
-최저임금 또는 업종별 최저임
<u>금으로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